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변우정 의원 외 3인)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우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3. 8. 12

발 의 자 : 변우정·나기보·
황이주·정상진 의원
(4인)

찬 성 자 : 15인

1. 개정이유

- 「방조제관리법」에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둔 방조제관리심의회를 폐지(법률 제6140호, 2000. 1. 12)함에 따라 방조제관리심의회 존속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목적규정에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조)
- 경상북도관리방조제관리심의회 관련 조문 삭제(제3조 및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방조제관리법, 방조제관리시행령

6.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해당부서(농촌개발과)의견
 - 조례 제3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운영)
 - 상위법령 「방조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6140호, 2000. 1. 12)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둔 방조제관리심의회를 운영 실적 저조 등 존속 필요성이 적어 동 심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 삭제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 3항에 따라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의한 <u>경상북도관리방조제심의회</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영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8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농수산국장, 건설도시 방재국장과 농촌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이내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u>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p> <p><삭제></p>

제4조(심의회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반 조성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이상이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관련법령

[방조제관리법] (법률 제6140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8조 <삭제>

(방조제관리심의회)

①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와 부산시 및 도에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를 각각 둔다.

<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② 방조제관리심의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

[방조제관리시행령] (대통령령 제16819호, 2000. 5. 25, 일부개정)

제10조 <삭제> (방조제관리심의회는 조직과 운영)

⑤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경상북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해당부서 검토의견서(농촌개발과)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농촌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명 띄어쓰기 ◦ 조항삭제 -제3조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제4조 (심의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상위법령 「방조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법률 제6140호, 2000. 1. 12)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서 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둔 방조제관리심의회를 운영 실적 저조 등 존속 필요성이 적어 동 심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 삭제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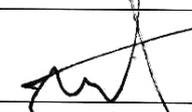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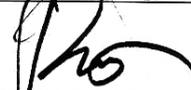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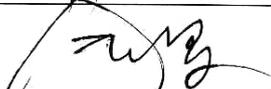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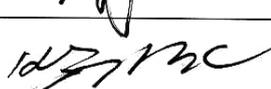
발의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변 우정	변 우정	
나 기 보	나기보	
홍 이 주	홍이주	
김 상민	김상민	

찬성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김 영 보		
김 영 기		
나 현 아		
권 영 만		
이 성 영		
이 경 임		
고 우 현		
김 창 숙		
이 성 호		
서 재 규		
김 개 석		
김 기 흥		
박 기 현		
정 옥		
배 우 향		

